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구체적
명시〉

■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32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구체적 명시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9일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는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및 프탈레이트류의 함량이나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 포장재에서 다량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검출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하여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 등).

Ⅲ. 검토의견

1.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구체적 명시

현행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 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¹⁾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²⁾으로 정하도록 하며 시행령 별표³⁾

1)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결한 공간을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2) 시행령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3) 시행령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2) 납은 함량으로 90mg/kg 이하일 것

3)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 [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Dibutyl phthalate),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 benzyl phthalate),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

에서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및 프탈레이트류의 함량이나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 기준을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항목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포함하여 이를 법령에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 -----

이트(DINP, Diisononyl phthalate), 다이아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 phthalate),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아이소뷰틸프탈레이트(DIBP, Diisobutyl phthalate)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합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모래 등 토양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방출량이 75mg/kg 이하일 것

다. 해당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의 총합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 μ g/m³ 이하일 것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μ g/m³ 이하일 것

현행	개정안
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 ⑩ (생략)	----- ----- ----- -----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1.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이하 이 조에서 “도료 등”이라 한다)에 들어있는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함량 2. 도료 등에서 방출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및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의 방출량 3. 도료 등에 함유되어 있는 프탈레이트류의 함량 4. 그 밖에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환경유해인자 ② ~ ⑩ (현행과 같음)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고,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환

경안정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현황]

(단위 : 개소, '23.12월 기준)

합계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교 도서관	놀이제공 영업소
135,375	81,436	30,923	8,441	6,175	194	6,248	1,958

* 출처 : (어린이놀이시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도서관) 교육부 ‘교육통계’, (놀이제공 영업소) 문화체육관광부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등

최근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 바닥 포장재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다량 검출되어 어린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2)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우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항목을 신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노출·위해성평가⁴⁾를 실시하여 관리 필요성 등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국내·외 사례

4)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해 정도를 평가

조사 및 어린이놀이터 소유자·관리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음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마감재료마다 검사하여야 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 모두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및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등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기준이 시행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 사회변화 등 개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도료 등에서 방출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방출량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 개정 외에 시행령 정비를 통해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 또한 병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2